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4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(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)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(안 부칙 제1조)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사용용도
2.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
3. 단위당 기준단가

안 부칙 제1조 중 “2025년 1월 1일부터”를 “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6조의2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)</u> <u>① 사업자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 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<신설>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 의 분담 시 분담금 액의 산정기준, 납 부방법 등 그 밖에</u>	제16조의2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) ① (개정안과 같음) <u>② 사업자가 제1항 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 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.</u> <u>1. 사용용도</u> <u>2. 용도별 부과 대 상 단위</u> <u>3. 단위당 기준단 가</u> ③ (개정안 제2항과 같음)

	<u>필요한 사항은 산</u> <u>업 통상 자원부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	
--	--	--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35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9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
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·수송 또는 분배를
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
과할 수 있는 ‘건설비용 부담금’을 폐지하고,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
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
시함(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)

나.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날로 수정함(안 부칙 제1조)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)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사용용도
2.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
3. 단위당 기준단가

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,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18조에”를 “제16조의2에”로, “부담하는”을 “분담하는”으로, “부담하게”를 “분담하게”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 중 “제18조에”를 “제16조의2에”로, “부담하게”를 “분담

하계”로, “부담한”을 “분담한”으로, “부담함으로써”를 “분담함으로써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)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 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.</u> <u>1. 사용용도</u> <u>2.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</u> <u>3. 단위당 기준단가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 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,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.</u>
<u>제18조(건설비용의 부담금) ① 사 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 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 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</u>	<u><삭 제></u>

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, 부과·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(생략)

4.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

5.·6. (생략)

제20조의3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)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

제20조(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3. 제16조의2에-----
분담하는-----

분담하게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3(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) ① 제16조의2에-----

-----분담하게-----

금 중 사용자가 <u>부담한</u> 금액 (「법인세법」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 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부담함으로써</u>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으 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-----<u>분담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<u>분담함으로써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